##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6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김한규·민병덕·강준현

임미애 · 박희승 · 장철민

서미화 • 한준호 • 박상혁

박홍배 • 이원택 • 김태년

위성곤 · 황운하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 및 헌법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 안,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 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해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표결방식에 대해서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합의를 하는 경우에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수기 투표가 실시되는데, 가(可) 또는 부(否)를 제외한 한자 표기가 있는 경우와가 또는 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실수로 투표용지에 점을 찍거나 흔적이 남는 경우 등 의도치 않게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9항).

법률 제 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9항 중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제2항"으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2조(표결방법) ① ~ ⑧ (생	제112조(표결방법) ① ~ ⑧ (현
략)	행과 같음)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	⑨ 제2항
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	
<u>2항</u> ,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	<u>한다</u> . <u>다만,</u>
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	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
<u>할 수 있다</u> . <u>&lt;단서 신설&gt;</u>	<u>하지 아니하다.</u>